

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17년 08월 24일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 부설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연구소의 구분) ①연구소는 본교로부터의 지원(공간 및 운영비) 여부에 따라 지원연구소와 비지원연구소로 구분한다.

②지원연구소라 함은 본교로부터 일정한도 내에서 지원(공간 및 운영비)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대학교 소속 교원의 학술연구 활동지원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된 각 계열별 연구소
2. 대학의 특성상 지원, 육성할 필요가 있거나 평가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연구소

③비지원연구소라 함은 본교로부터 지원(공간 및 운영비)이 없는 연구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본교로부터 지원(공간 및 운영비)을 전제하지 않고 설립된 연구소
2. 평가에 의하여 비지원연구소로 분류된 연구소
3. 특성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연구소

제4조(연구소의 설치) ①연구소는 전문영역의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교의 학술연구진흥에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.

②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립하며, 비지원연구소는 본 대학교로부터 지원(공간 및 운영비) 없이도 외부로부터의 연구비 조달이나 재정지원

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 이를 설립할 수 있다.

1.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당분야의 연구를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
2. 본 대학교의 특성에 비추어 해당분야 연구를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

제5조(설립 절차) ①연구소 설립 신청은 연구 활동에 참여할 해당분야 전공 전임교원의 발의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한다.

1. 연구소 설립 계획서(설립목적, 필요성, 배경, 연구 분야, 학술적 기대효과, 기본사업, 운영계획, 조직, 발의교원현황 등 기술)
 2. 사업계획서(향후 2년 간 세부사업계획 포함)
 3. 연구소 운영규정(안)
- ②연구소 설립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연구소장) ①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두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②연구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단, 해당 전공 근무경력 및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전임 교원도 임명할 수 있다.

③연구소장은 해당 연구소를 대표하며, 연구업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

④연구소 사업에 관한 문서관리 및 기록을 보관하며, 회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둔다.

제8조(연구원) ①연구소에는 연구원, 위촉연구원,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.

③위촉연구원은 국내·외의 해당분야 전공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④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재정지원) 연구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 단, 비지원연구소의 경우는 지원이 없다.

- 제10조(평가)** ①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자생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그 실적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지원연구소는 최초 1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하여, 연구 활동이 우수할 경우 지원 연구소로 승격할 수 있다.
- ②연구소에 대한 실적 평가는 교학처가 주관하며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소의 존폐 및 통폐합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.
1. 각 연구소 간의 설치 목적과 사업 등이 중복 또는 유사한 경우
 2. 연구 실적이 부실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
 3. 연구소 본래의 설치 목적과 사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- ③비지원연구소의 실적이 지원연구소 승격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비지원연구소의 자격은 1년 기준으로 연장되며 다음연도 기간 내의 실적을 재평가 한다.
- ④비지원연구소의 지원연구소 승격 기준은 평가기간 중 외부연구비 수탁금액으로 하며 인문사회계열(예·체능 포함)은 3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.
- ⑤평가결과는 연구소에 대한 재분류(지원연구소, 비지원연구소) 및 통폐합 시 이를 반영한다.

- 제11조(재정)** ①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- ②연구소의 재정은 자체조달(학술연구비 수입금, 기부금, 기타 보조금)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제9조 재정지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- ②(기존연구소에 대한 분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설립된 연구소는 본 규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.